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 지침”이 '95년 12월 29일자 노동부예규 제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①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제5조(목표시간) 무재해달성목표 기간 또는 시간 설정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2】 업종별, 규모별 무재해 1배목표 기간 또는 시간

업종	1	2	3	4	5	6	7
근로자수(기간, 시간)							
100인 미만(일)	130	195	260	325	390	455	520
100-199인(일)	120	180	240	300	360	420	480
200-299인(일)	100	150	200	250	300	350	400
300-499인(만시간)	30	45	60	75	90	105	120
500-999인(만시간)	70	90	110	130	150	170	200
1,000-2,999인(만시간)	130	175	220	265	310	355	400
3,000-4,999인(만시간)	200	275	350	425	500	575	650
5,000-9,999인(만시간)	290	375	460	545	630	720	820
10,000인 이상(만시간)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별표 3】 건설업종(8군)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공사규모	50억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및 국외
공사종류				
건축, 플랜트 공사 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  
-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 공사를 적용

② 제7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 등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

## 안전해설 1-2

려야 한다.

②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는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㉔ 제8조(무재해기록판 등 설치) 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계양 및 강하, 기의 제작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 5】 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계양 및 강하, 기의 제작방법 등

#### 1. 기의 용도별 규격

호 수	깃면규격(길이×나비)	깃대길이	깃봉직경	용도
특 수	210cm이상×14cm이상	7m이상	14cm이상	특별행사장용
1호 (기본형)	135cm×90cm	5m이상	10cm	사업장건물의 옥상 또는 전면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계양 대용(작업현장 실내계시용)
2호	45cm×30cm			실내계시용(사무실)
3호	30cm×20cm	35cm이상	2cm	탁상용

※ 특수, 2호, 3호는 필요에 따라 사용

#### 2. 깃면의 구성

가. “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녹색, 심볼마크는 금색,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나비는 3대 2의 배례로 한다.

나. 기의 깃면은 무재해 마크와 무재해 글자로 구성한다.

#### 3. 기의 계양 및 강하

가. 기는 항시 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 또는 눈이 오거나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를 계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는 깃면의 심볼마크가 윗쪽으로 오도록 하여 무재해글자의 “무”자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계양하여, 깃봉과 깃면의 사이는 이를 떼지 아니한다.

다. 기 계양중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과 깃면의 나비만큼 떼어 계양한다.

라. 기의 깃면을 건물안의 작업현장이나 사무실, 강당 등에 게시할 때에는 출입문 맞은편 벽의 중앙윗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좌, 우측벽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4. 기의 제작방법

- 가. 기의 심볼마크와 무재해글자의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공식적인 의전행사에 사용하는 정기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고급 공단이나 벨벳 (Velvet) 등 고급재질로 제작하고, 무재해 글자는 발색이 좋은 유광금색의 지수로 처리한다.
- 다. 무재해 심볼마크는 무재해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표상하는 상징물로 무재해 이미지 부상과 신뢰도 향상에 직결되도록 제작하고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라. 무재해기의 심볼마크 및 로고(글자) 제작시 의문이 생길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부에 협의하여야 한다.

㉔ 제11조(무재해달성사업장 시상) ①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시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무재해목표달성 시상기준 및 내용

시 상 기 준	시 상 내 용	시 상 기 준	시 상 내 용
업종별 목표 1배 달성	무재해달성장	업종별 목표 5배 달성	무재해달성장, 동탑
업종별 목표 2배 달성	무재해달성장	업종별 목표 10배 달성	무재해달성장, 은탑
업종별 목표 3배 달성	무재해달성장	업종별 목표 20배 및 10배 추가	무재해달성장, 금탑

- ㉕ 제19조(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재해목표 1배 이상 달성 사업장에 대하여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1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포상 추천시 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또는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서 무재해 목표를 3배 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한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당해사업장의 무재해목표달성 유공자에 대하여 해외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